

『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
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2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2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2월 25일

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정책방향이 자원재활용에서 발생억제로 전환됨에 따라, 발생량 처리에 대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하여,
-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함임.

다. 주요내용

-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의 단서조항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재확정(안 제2조 제3호)
-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(안 제9조 제1항 ~ 제3항)
-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개선(안 제10조)
-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일원화(안 제1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4항, 제15조(법률 제10389호, 2010.7.23)
 - 「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 (환경부, 2010. 8)
- 입법예고 : 2012. 11. 9 ~ 11. 29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.(2012.12.4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○ 본 제정조례안은,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4항, 제15조와 「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에서 위임한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임.

○ 그 주요내용으로는,

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까지 범위 확대,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징수,

배출 및 수거방법의 개선,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(칩)을 발행하고 판매자의 판매이익 부여,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가능,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용기와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업소명을 표기, 과태료 부과사항을 일원화하였음.

○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자원재활용에서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되고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하여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것임.

○ 지난해 우리시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, 금년 4월 부터 권역별 순차적 시행에 따른 개별계량(RFID) 및 납부필증(칩) 제도 등 시민이 배출방식을 알기 쉽도록 주민홍보가 요구되며,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, 수집, 운반 업무에 표준화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위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안이 개정되어 있으므로, 음식물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고,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는 종량제가 정착되도록,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